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4796, 2024다234819, 2024다234802 판결 [질권소멸통지 등
지등·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부당이득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건	2024다234796(본소) 질권소멸통지 등 2024다234802(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2024다23481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1. A 2. B 원고C
피고(반소원고),상고인	1. D
변호사	홍승면 2. AA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윤용준, 박재현, 백정화, 정헌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3. 21. 선고 2022나2052981(본소), 2023 나2019837(반소), 2023나2027739(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5. 3.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반소원고)들이 원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수계약이 규정한 확약 조항의 해석 내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이 사건 인수계약이 규정한 진술 및 보장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 사건 인수계약이 규정한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단시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행거절 등 계약해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내지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신숙희(주심) 서경환 노경필